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42
----------	-------

발의연월일 : 2025. 10. 28.

발 의 자 : 김영호 · 이병진 · 윤준병
용혜인 · 김종민 · 김현정
박희승 · 한민수 · 강경숙
이주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신문사업자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시사·보도 분야를 방송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중 상당수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배포하는 이른바 ‘기사 베끼기’, ‘출처 미표기’를 관행처럼 행하고 있음.

따라서 인터넷신문의 「저작권법」상 ‘출처 표시 의무’는 형해화되고 「저작권법」에 따른 구제 절차는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 언론사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마땅치 않아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신종 뉴스 플랫폼 등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언론 활동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를 일부 또는 전부 복제·배포·방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와 원출처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밝히도록 하여 무분별한 보도의 복제·배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배포·방송하는 경우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 및 해당 기사의 내용 및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밝혀야 한다.

제39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0조의2(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제·배포·방송하는 경우 해당 기사를 생산한 자 및 해당 기사의 내용 및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등을 밝혀야 한다.
제39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 9. (생략) ③ (생략)	3.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